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23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출연기관인 (재)세종문화회관이 전담 관리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성북구 대사관로 3(성북동)
- 사용자 : (재)세종문화회관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0,064 m^2 , 건물 연면적 4,399 m^2
- 사용허가 기간 : 2018.1.1 ~ 2018.3.31 (3개월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現민간수탁자인 (재)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삼청각 운영은 협약기간 종료('17.12.31)후 '18.3월까지 협약기간 연장하여 삼청각 사용을 통한 한식당 영업 등 수익활동 없이 오로지 시설 유지·관리 및 노후시설 개·보수공사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

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 충족

- (재)세종문화회관에서 수익활동 없이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 수탁시 오히려 시설유지에 따른 관리비·인건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존 이익잉여금(299백만원)으로 처리예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18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18.1.25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
- 심의결과 : '적정'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
※ 작성자 : 박물관과 박물관정책팀 김현강 (☎2133 - 4184)